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

글 : 김인수 (kiminsue@kaist.ac.kr)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연구조교수

I. 서론

기업의 성장과 소멸, 그리고 재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나, 소멸 후,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이 처해있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안전망에 달려있다고 보여 진다. 어떤 국가에서는 재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재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국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실패 및 재도전의 현황, 재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도전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도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0.6에 달하지만,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기업 중, 국세청이 직권폐업을 내리기 전의 기업 수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의 기업(잠정적 폐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신규법인보다 더 많은 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 신규사업자와 폐업 수 비교

(단위: 천명)

구분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2007	5,005	1,135	894	479	75	46
2008	5,234	1,087	844	504	75	50
2009	5,419	1,043	840	529	80	55
2010	5,602	1,071	860	557	83	54
2011	5,772	1,083	897	594	89	51

자료: 국세청, 「2012국세통계연보」, 2012.12

II. 우리나라의 실패 및 재도전 내용

1. 실패와 재도전 현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법인 창업 수를 보면 2011년 기준 8만 9천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고, 2010년은 8만 3천개의 법인이 창업 신고를 마쳤다. 반면 폐업 기업 수를 보면, 2011년 5만 1천개의 법인이 폐업을 하였고, 2010년에는 5만 4천개의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 통계상, 즉 공식적으로는 신규 창업법인 대비 폐업 비율은 약

한편, 폐업 이후 재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경험을 쌓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성공을 위한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실패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업인보다는 실패를 경험해 본 기업인을 우대하고, 자금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생존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설립된 이후, 1년 생존율은 약 70%, 2년 생존율은 55%, 3년 생존율은 45%, 그리고 5

년 생존율은 33%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나,¹⁾ 현장에서는 1년 생존율을 약 50%, 2년 생존율을 약 25%, 그리고 3년 생존율을 약 10%로 보는 경향이 있다.²⁾ (단, 생존율은 영업활동 및 매출 발생 기준) 지금까지 실패 기업에 대한 재창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이 있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실패 및 재도전 정책을 연구 중인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연구 자료³⁾에 따르면, 폐업하기 전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창업을 한 경우는 14,952개 기업으로 전체 폐업 기업의 18.2%를 기록하고 있으며,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임원 제외) 재창업을 한 경우는 5,904개 기업으로 7.2%에 달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 본인이 명의로 스스로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로 창업을 한 경우는 2,444개 기업으로 2.9%에 달하고,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재창업 기업 대표이사가 아니라, 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3,460개 기업으로 4.2%에 달하였다. 한편, 폐업 기업의 대표가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재창업을 한 5,904개의 재창업 기업 중 약 72%인 4,260개 기업에서 은행거래 및 기업 영업 활동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고, 1,276개 기업인 21.6%는 다시 폐업을 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었다.⁴⁾ 재폐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창업

을 한 경우인 2,444개 기업 중, 21.5%인 526개가 다시 폐업을 하고 있었으며, 폐업기업의 대표가 등기임원으로 재창업을 한 경우인 3,460개 기업의 경우, 21.6%인 750개의 기업이 다시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폐업 기업 대표가 대표이사 또는 등기 임원이 아닌, 주주 및 계약 관계 등으로 신규 법인에 참여하는 차명창업의 경우 알 수 없기에,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다.

표2: 재창업년도 기준 재창업 기업 수 및 재창업까지 기간

재창업 년도(년)	재창업 기업 수(개)	재창업까지 기간(개월)
2007	308	29.6
2008	383	34.2
2009	567	38.1
2010	780	43.6
2011	916	48.3
2012	1,140	54.4
2013	1,357	62.1

자료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nd Management Lab

한편, 폐업 후,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창업 기업수와 재창업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약 4년 (47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재창업 기간과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길어지고,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및 금융위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1)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2)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nd Management Lab (2013년~2014년 재도전 정책연구 보고서, 심층인터뷰 자료_Venture Capitalist 인터뷰 결과)

3)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nd Management Lab (폐업 기업 Data Base 분석 자료, 2014_ 2000년부터 2011년 국제청과 법원에 동시에 폐업 신고 된 기업 중, 폐업 전 최소 1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했고, 은행 및 신용평가 기관 기록이 1회라도 있는 기업 82,154개를 분석한 결과)

4)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실패 및 재도전 연구 자료, 2014.11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창업 기업 수가 많아지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이나, 재창업의 평균 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재창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패 기업인들이 재도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2010년 이후, 재도전 지원 정책에 힘입어 재창업을 함으로써 폐업 후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기업 실패 및 재도전 프로세스

기업이 폐업을 한 후, 재도전까지는 기업의 상황 즉, 폐업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재도전까지의 기간과 어떤 재기를 위한 절차를 따르는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위험에 직면하면, 위험을 극복하고자 자구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위험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재도전조차도 힘든 지경에 이르러, 폐업을 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기업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업이 위험에 직면하면, 매우 주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오래되고, 대표가 애정을 많이 쏟은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대표는 어려움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안으로 더 문제가 커지게 되고, 외부에서 인지를 했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 폐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 하게 되는데, 폐업에 직면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기업을 정리하기 때문에, 재도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 한 후, 기업의 위기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외부 전문가들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자문과 도움 없이, 스스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부채, 국세, 노무, 특히, 자산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당시에는 큰 생각을 하지 못하였겠지만, 향후, 재도전을 위한 기반이 무너져버리게 될 수도 있게 된다.

기업이 폐업 후, 기업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이 필요하게 된다. 힐링 중에서도 계속되는 채무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상태는 매우 안 좋아져서, 신용불량 상태가 될 것이며, 법인세가 대표이사(과점주주)로 이전됨에 따라 국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인사노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소한 1년~2년간은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받으며 지낸다. 압류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아닌 현금을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복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후, 주변지인 등을 통하여 신용회복에 대하여 알게 되고, 3년~4년차에 비로소, 신용회복을 통하여, 재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실패한 기업인들은 파산면책이란 재도는 들어봤으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

이 있다. 부채가 많을 경우(5억 이상)에는 파산과 면책을 법원에서 신청 하게 되고, 부채가 적고 변제할 의지가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통한 재도전의 기회를 보게 된다. 파산 면책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면책을 받거나 신용회복 확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과거의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어렵지만, 2년~5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 기록이 삭제됨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3. 재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신용불량 주홍글씨 -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기업 실패 후,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의 시간이 지나고, 재도전 또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파산면책 제도 또는 신용회복 절차를 통하여 면책과 신용회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여전히 재창업을 원하는 재도전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둘째, 일회성 성격의 지원 자금 - 재도전에 필요한 것은 일회성의 재창업 지원자금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 지원자금과 투자자금이다. 과거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인들은 제1금융기관 뿐 아니라, 제2금융기관과 기보 및 신보 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회성의 재창업 자금이 지나지 않게 된다.

셋째, 정부R&D 과제 활용 - 정부 R&D 과제에

“과거” 신용불량자 기록이 있는 기업인들은 면책 및 신용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과제에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는 과거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정부가 면책과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면책과 신용회복이 된 기업인들이 정부지원과제를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 자격을 박탈해서, 정부과제에 제한을 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있다. 이에, 면책이나, 신용회복이 된 기업인들이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 지원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넷째, 재도전 교육 - 실패와 극복,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는 재도전 전문가와 창업 교육 콘텐츠를 재도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재도전 전문가들은 대기업 및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조정 전문가와 립 서비스(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말하는)를 하는 경험 없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중소벤처기업을 이해하고,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재도전에 특화된 재도전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섯째, 체납국세 - 과거 기업 운영 중, 체납국세가 있으면, 이는 파산 및 면책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체납국세는 증가산되어 5년 후면, 약 7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한편,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도 기업이 체납한 국세의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다만, 기업이 폐업을 하였을 때, 납부하지 못한 국세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실패 기업인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과거 신용불량 기록과 은행연합회 전산 시스템 -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고, 전체 은행이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에, 특정 은행에서의 과거 신용불량 기록은 모든 은행의 전산에 보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과거 신용불량 기록에 대한 자료는 자동 삭제가 되지 않고,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은행연합회에 삭제 요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일곱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인식 -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은 부도덕한 기업인을 보거나, 나쁜 짓을 한 범죄자로서 실패 기업인들 취급하고, 대하고 있다. 이에, 실패한 기업인들조차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로서 여기거나,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도전에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 국내/외 재도전 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재도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2013년 10월 30일 재도전지원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벤처패자부활제('05), 재창업자금 지원제도('10), 재창업지원위원회('12) 등)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며, 이는 '창업 → 성장 → 회생 → 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재도

전 지원체계 구축 및 재도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⁵⁾

첫째, (창업 단계) 창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단계적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고,

둘째, (성장·회생 단계) 기업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정책 방향,

셋째, (퇴출·재창업 단계)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 단계로서 재도전 기업인 활용 및 실패 경험 교육자산화를 위한 사업 추진

넷째, (관련 인프라 확충) 효과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정부는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 관련 법적근거 보강 및 전담기관 설치하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III.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

재도전 정책 제언

재도전 패스트트랙의 도입이란, 단순히 기업 실패 이후, 재도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뿐 아니라, 효율적인 재도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과 재도전을 위한 현명한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폐업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재도전을 위한 희망과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인드와 함께 실패를 소중한 경험과

5)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3.10.30.)

표 3 : 해외 재도전 정책 주요 내용 정리

	관점 또는 철학	원칙	제도 및 프로그램
유럽: 독일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들이 생존할 수 있고 기업가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기업생태계가 활성화 됨 · 정직한 실패자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것이 신규창업자를 지원하는 것 보다 더 실효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도전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 책임자 역할을 수행 · 단기적으로는 현 도산기업에 대한 처리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전 예방 부문에 노력을 집중 ·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실패 및 재도전을 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Policy (2008) · 사회인식개선 – 파산관련 법률체계 정비 – 조기경보 및 예방체계 정비 –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혁신 결과와 실패에 대한 관용은 상호 비례 관계 · '기업의 실패'는 '기업가의 실패'가 아닌 '투자자의 실패'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기업실패는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 · 관련 법률체계를 친기업적 측면에서 'One-Stop' 될 수 있도록 정비 및 유지 ·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대응될 수 있도록 기초 환경 정비(엔젤투자 활성화 통해 초기 창업 때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의 전문성 제고, M&A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A Recovery Agency Act(2009) –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법정부적 조정기능을 SBA에 둬(주로 보증용) · Fresh Start Policy – 소유경영인으로서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 등 정비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American Recovery Capital – 재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 자금 지원 · 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몇 번이고 재도전이 가능하고, 승자와 패자가 고정되지 않는 사회의 필요성 강조 · 그러나 실제 실패에 대한 관용의 문화 미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치밀하고 지속적인 지원 · 기존제도가 미비한 경우 근본적 검토 및 개선 · 기업, 비영리민간 단체(NPO), 학교, 지역 등의 참여를 통해 사회 의식과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발표 (2006.12.) –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 – 기회의 균등화 지원 – 복선형 사회의 실현 지원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조직화 (2003)

자료: 실패기업인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정화 외, 중소기업학회 2012.12

자산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창업에 대한 걱정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창업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효율적인 재도전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사전적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재도전 범위에 대한 이해이다. 우선, 재도전과 재창업은 다른 용어임을 이해해야하며, 재도전과 재창업에 대한 정책 역시 구분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도전을 재창업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데, 재창업은 재도전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재

도전은 재창업 이외의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으로, 예술가로, 학자로, 기술자로 사회 속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활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인의 성향에 따라, 또는 실패 때 겪은 경험에 따라, 폐업 당시 준비한 재도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에 따라,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도전을 원하는 사람들 중, 재도전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실제로 어려워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재도전을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신용회복 이면에 있는데, 그것은 금융활동에 대한 제약이 될 것이다. 신용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재기 기업인들이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재도전을 어려워하거나, 재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한편, 신용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재도전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가정이 파괴되고, 지인들이 떠나버리고, 사회조직에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재도전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도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보면, (1) 지속가능한 재도전 자금 제공 부문, (2) 재도전 전문가 양성, (3) 재도전 전문 교육 및 멘토링 지원 강화, (4) 재도전 기간의 근본적 문제인 ‘현명한 폐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4가지의 부문인 재도전 자금, 재도전 전문가 양성,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재도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등을

이해하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재도전 활성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IV.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재도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기존 ‘재도전 패스트트랙’의 경우, 정책의 연계성(지속적인 금융권 지원)과 정책의 대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 ‘패스트트랙’에서는 신용회복 기간과 절차를 줄이고 간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내용은 신용회복을 빨리해도, 신용회복을 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신용회복 이후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재도전 전문 교육, 멘토링 등)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재창업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 재도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과 정책의 대상은 기업회생을 하는 중견 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도산 (자진폐업 또는 직권 폐업 등)을 하는 중소벤처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업회생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민간 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 회생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재도전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재도전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전문가들이거나, 특별한 재도전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컨설턴트 또는 재기기업인

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의 경우, 수천억원부터 수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을 구조조정 하여 매각과 M&A를 주로 하는 전문가들이기에, 작은 규모의 매출 기록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특성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창업자문을 하는 컨설턴트들이나, 실패 경험을 갖고 멘토를 전업으로 하는 기업인들의 경우, 재도전에 대한 법률적, 회계적, 전략적, 변리적인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재도전의 본질은 빠른 신용회복이 아니라, 현명한 폐업에 있다는 것이다. 즉, 현명한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현명한 폐업으로 인한 재도전의 인프라 유지와 빠른 신용회복은 재창업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폐업 후, 재창업까지의 기간 단축은 폐업 후 신용회복을 빨리한다고 재창업을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할 때, 재도전을 염두하고, 폐업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폐업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폐업을 할 경우,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도전이 가능할 것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포자기 상태로 폐업을 할 경우, 5~8년이 걸려도 재도전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기 기업인들이 너무 정부 의존적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재기 기업도 일반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재도전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제로 절실하게 재도전을 하려는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기업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선별하여 집중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

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은 정책이 수립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통하여 재도전 정책을 널리 알리는 면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이미 많은 기업인들에게 재도전 정책이 각인되었기에, 재도전 정책의 효율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 중소기업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8
-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3.10.30.)
- 국세청, 『2012국세통계연보』, 2012.1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2년~2014년) _ 키워드 (실패, 재도전, 폐업, 재기)
- 미국 연방도산법 조문 참조(<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1>)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2년~2014년) _ 키워드 (실패, 재도전, 폐업, 재기)
-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 2013년 1차, 2차 재도전기업인 간담회 재도전 정책에 대한 애로사항 서면 인터뷰 자료
- 배영임 외, 원활한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한 재기활성화 조사·연구, KOSBI, 2013
- 백필규,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패자부활센터 설립방안 연구, KOSBI, 2009
- 백필규,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방안 연구, KOSBI, 2011
- 벤처생태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배영임·표한영·김영태, KOSBI, 2012.
- 서울특별시의회 백필규, 서울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운용 효율화 방안, 2009
-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0.10.30.)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2년~2014년) _ 키워드 (실패, 재도전, 폐업, 재기)
-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
- 한정화 외, 실패기업인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2.12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nd Management Lab (2013년~2014년 재도전 정책연구 보고서, 심층인터뷰 자료)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Turnaroud Management Lab (폐업 기업 Data Base 분석 자료, 2014)
-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nd its Impact on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Programs, Stanley Luboff, Capital Programs